『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안내



(Ver 24.4)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근거	 동법 시행령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동법 시행령 별표 6(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응시 자격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영」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항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소방안전관리본(소방학계로 재난관리로 소방관계업규를 포함한다) 2. 유제역학 3. 위험물질을 및 약제화학 6. 건축공학 9. 기계공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7. 전가전자관학 10. 화재운동학(영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5. 방과 및 방목공학 8. 가스안전 11. 화재조사론 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 1. 전기공학교(신입안전과, 산업공학과, 인전공학과, 인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2. 신입안전공학교(산업안전과, 선업공학과, 인전공학과, 인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교(건축과, 건축관과, 건축설계학과, 기계전자관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원업안전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원업안전과를 포함한다) 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한다) 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한다) 2. 소방의전과학교를 포함한다) 2. 소방의전과학교를 포함한다) 3. 소방학전관리학과, 3 학급학교 보안 경망계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과 또는 공학교를 포함한다) 2. 소방관전관리학과 3. 소방학자학과 공방원과를 포함한다) 2. 소방관전관리학과 3. 소방학자학과 3. 소방의전과를 포함한다) 5. 소방학전관리학교(소방환경안전과를 포함한다) 2. 소방관전관리과(소방환경안전과를 포함한다) 2. 소방관경관리과(소방환경안전과를 포함한다) 5. 소방관점과 3. 소방하지 학교에 해당하는 학 (과 또는 공학교를 포함한다) 6. 소방관점과 (소방환경안전과를 포함한다) 5. 소방관점과 (소방환경안전과를 포함한다) 5. 소방관점과 (소방환경안전과를 포함한다) 5. 소방관점과 (소방환경안전과를 포함한다) 6. 소방관점과 (소방환경안전과를 포함한다) 6. 소방관점과 (소방환경안전과를 포함한다) 5. 소방관점과 (소방환경안전과를 포함한다) 5. 소방관점과 (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를 포함한다) 5. 소방관점과 (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 등 조망한대의 6. 소방환경안전과를 포함한다) 6. 소방환경안전과를 포함한다) 6. 소방관점과 (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망재학과, 소방환경망재학과 (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망재학과 (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악전학과 (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망재학과 (공방환경악전과를 포함한다) 6. 소방관점과 (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망자학과 (공방전자관과 (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악전관전관점과 (소방환경안전관점과 (소방환경안전관점과 (소방환경악전관전관전관전관전관전관전관전관전관전관전관전관전관전관전관전관전관전관전관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라.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 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 력이 있는 사람
-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참고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ᆈᇷ	시험명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정보	시험일정	사이트 시험일정 참고
9 T	및 장소	(안전원사이트 내 소방안전교육>시험접수> 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구분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1과목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시험과목				소방시설의 종	등류 및 기준						
			소방시설	(소호	화·경보·피난구조·소	화용수·소화	활동설비	l)의 구조				
비원			소방시설(소화	·경 5	d·피난구조·소화용	수·소화활동설	설비)의	점검·실습·평가				
시험			소방계획 수협	립 0	l론·실습·평가(화재	안전취약자의	의 피난	계획 등 포함)				
정보			자위소병	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	론・실습	 슼 • 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	가					
		2과목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4										
	시험방법		시험 방법		배 점 문항수		시간					
	및 시간	객관4	식(선택형,4지 1선택	!)	1문제 4점	50문형 (과목별 25		1시간(60분)				
	합격자 결정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	 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	상 득점한 사람				
	합격자 발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합격자에	한하여 「1급 소	방인	선관리자 자격증	을 발급할	수 있습	 하니다				
			구 분	시도지부 방문접수			안전원 사이트 접수					
					(근무시간 : 9:00 ~ 18:00)			(www.kfsi.or.kr)				
		접수시 관련 서류			• 응시수수료 (현금,카드 등) • 사진 1매			• 응시수수료 결제				
					• 응시자격별 증빙서류(해당자 한함)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증빙이 불필요한 경우			가 능			가 능				
시험			필요한 경우 력,경력,학경력,	n			가 능					
접수	접수방법		, -, 6 -, - 6 -, 가격증의 경우)	가 능			단, 사전심사 필요 (5~7일 소요)					
_ `		※ 안전원 사이트 접수 시(마감된 시험일정의 경우 접수 불가)										
							•	:시이력이 있을 경우				
		· 강습교육 수료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급수의 자격시험에 응시이력이 있을 경우 → '시험일정'에서 접수가능										
		· 경력·학력·자격증 등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mark>(최초에 한함)</mark>										
		→ 홈페이	지 내의 '응시자	격 심	심사 신청'에서 해	당 응시자격	신청(종	등빙자료 첨부 必)				
		단, 5~	-7일 소요되며 , 선	기사	완료 후 승인 시	'시험일정'에	서 접수	: 가능				

		[접수시 주의사항] 1.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 2.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 3. 시험일정 변경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시험 전 가능하며 시험당일 이후에는 일정변경 및 환불신청(4.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니다.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이 불가합니다.(결시자 포함) 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수수료	12,000 원 ※ 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일정변경	해당시험 전일 근무시간까지 일정변경 가능							
	제출서류	 시험응시원서 *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증명사진(3.5cm x 4.5cm)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응시자격 증명서류 ※ 3, 4는 학경력 등 시험접수자 중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 	하는 경우에 한함						
시험		환불 기준	금 액						
법구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 한 경우	과오납 금액						
	환불 규정	시험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전 액						
		시험시행일 부터	환불불가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							
응	시표 교부	시험응시표는 시험 당일까지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험 응시자	지험당시표는 시험 당일까지 당시자가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1. 응시자는 응시표에서 정한 입실 시간(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사진(미제출자에 한향)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공무원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및 학생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에 한함)에 한함 3.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에 시험교시,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PDA 등) 및 MP3, 녹음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휴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 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8.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30분전부터 답안 제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습니다.							



10. 시험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야 합니다. 11. 응시자는 시험시행 공고문, 응시표,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1. 안전원 사이트 로그인
- 2. 안전원 사이트 "소방안전교육-시험신청" ➡ "시험일정" 클릭 ➡ 응시하고자하는 지 부 시험날짜 클릭 ➡ 시험신청자 정보입력 ➡ 신용카드 결제 또는 LG데이콤 무통장 계좌할당 및 입금 ➡ 시험신청 완료

인터넷 시험접수 및 결제방법 안내



• 근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지부별 연락처

지부별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서울지부 (서울 영등포)	02-850-1378	서울동부지부 (서울 신설동)	02-850-1392	
부산지부 (부산 금정구)	051-553-8423	대구경북지부 (대구 중구)	053-431-2393	
인천지부 (인천 서구)	032-569-1971	울산지부 (울산 남구)	052-256-9011	
경기지부 (수원 팔달구)	031-257-0131	경기북부지부 (파주)	031-945-3118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042-638-4119	경남지부 (창원 의창구)	055-237-2071	
충북지부 (청주 서원구)	043-237-3119	광주전남지부 (광주 광산구)	062-942-6679	
강원지부 (횡성군)	033-345-2119	전북지부 (전북 완주군)	063-212-8315	
제주지부 (제주시)	064-758-8047			
	<u> </u>			

[]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

※ 음영부분은 특	투급 소방안전	!관리자 시험접<	수자에 현	한하여 []에 ✓표를	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응시번호		제1차/ 제2차/		시험장소(응시지역)							
응시자	성명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 진 (가로 3.5cm × 세로 4.5cm)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륗」제32조제1형 소방안전관리자					받은 법	시항	성규칙	
								년	<u> </u>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업	안전원징	귀하										
		1. 사진(가로 3.5cm × 세로 4.5cm)						수수료				
응시:	자	2. 응시자격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특급	1차시험	1만	8천원	
제출서류 등		3. 응시자 신분증(본인여부 확인 용도)						특급	2차시험	2만	4천원	
		4. 대리인의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 • 2 • 3	급 시험	1만	2천원	
				·············(자르는 신	<u>1)</u>							
				응 시 표	<u>E</u>							
응시번호		[] 제1차시험 시험장소(응시지역										
		[] 제2차	제2차시험									
성명				생년월일				사 진 (가로 3.5cm ×				
 시험일시									세로 4.5	ocm)		
							년	월	<u> </u>	일		
			하	국소방안전	워장 🖟	<u>Ō</u>]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흑색 필기구,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지우개 및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야 합니다.